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영진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15680

발의연월일: 2022. 5. 20.

발 의 자:김영진·김병욱·김성주

김성환 · 김주영 · 박 정

박찬대 · 서동용 · 송기헌

양기대 · 위성곤 · 윤준병

이병훈 · 정일영 · 천준호

의원(15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무주택근로자의 주택임차자금 차입금의 원리금 상환액에 대한 소득 공제는 전세 거주 가구의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로 무주택 세대주가 국민주택규모(전용면적 $85m^2$)의 주택 등을 임차하기 위해 금융기관에서 돈을 빌렸다면 원리금 상환액의 40%(한도 연간 300만원)까지 공제가 가능함.

그러나 한국부동산원이 발표하는 종합주택 전세가격지수를 2021년 6월 기준(100)으로 볼 때 2021년 10월은 102.5, 2022년 4월은 103.2로 상승 추세를 보이고 있음.

또한 전세와 대체관계에 있는 월세 세입자에 대해서는 월세세액공 제를 확대되는 경향을 감안하여 양 조세특례의 조세형평성을 도모할 필요가 있음 이와 같은 전세가격지수의 상승추세 및 월세세입자와의 조세형평성을 감안할 때 전세대출 원리금 상환액 소득공제 확대를 통해 서민들의 주거비 안정을 도모할 필요가 있음.

이에, 전세대출 원리금 상환액 소득공제의 실효성을 강화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사항을 보완하려는 것임.

첫째, 전세대출 원리금 상환액 소득공제의 공제율을 현행 40%에서 80%로 조정하려는 것임.

둘째, 전세대출 원리금 상환액 소득공제의 한도를 현행 300만원에서 600만원으로 조정하려는 것임(안 제52조제4항).

법률 제 호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소득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2조제4항 본문 중 "100분의 40"을 "100분의 80"으로 하고, 같은 항단서 중 "연 300만원"을 "연 600만원"으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특별소득공제에 관한 적용례) 제52조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시행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에 지급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52조(특별소득공제) ① ~ ③	제52조(특별소득공제) ① ~ ③
(생 략)	(현행과 같음)
④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주택	4
을 소유하지 아니한 대통령령	
으로 정하는 세대(이하 제5항	
에서 "세대"라 한다)의 세대주	
(세대주가 이 항, 제5항 및	
「조세특례제한법」 제87조제2	
항에 따른 공제를 받지 아니하	
는 경우에는 세대의 구성원을	
말하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외국인을 포함한다)로서 근로	
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대통령	
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이하	
의 주택(주거에 사용하는 오피	
스텔과 주택 및 오피스텔에 딸	
린 토지를 포함하며, 그 딸린	
토지가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을	
초과하는 경우 해당 주택 및	
오피스텔은 제외한다)을 임차	
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	

하는 주택임차자금 차입금의
원리금 상환액을 지급하는 경
우에는 그 금액의 <u>100분의 40</u>
에 해당하는 금액을 해당 과세
기간의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
한다. 다만, 그 공제하는 금액
과 「조세특례제한법」 제87조
제2항에 따른 금액의 합계액이
연 3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금액(이하 이 항
에서 "한도초과금액"이라 한다)
은 없는 것으로 한다.

5 ~ ① (생 략)5 ~ ① (현

<u>100분의 80</u>
연 600만원
⑤ ~ ⑪ (현행과 같음)